

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.
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안사유

- 농지법 제25조의 임차료의상한 규정이 삭제(1999.3.31)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과
- 농지전용등 심사시 "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 관계 있는 경우"에 기피 신청하게 되어 있으나 그 한계가 모호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함.

2. 주요골자

- "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"를 "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"로 제명 개정
- 제1조 목적중 "임차료상한"규정 삭제
- 제4조제1항제4호 "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심의" 규정 삭제
- 제7조제2항제2호를 "당사자 일방과 민법상8촌이내의 관계 또는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관계에 있는 경우"로 완화
- 제11조(임차료 상한)규정 삭제

3. 관련법령 : 해당없음 (제3차, 제4차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의결)

- 붙 임 : 1.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
2. 신.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"중" 및 "임차료상환"을 삭제한다.

제1조중 " 및 농지임차료상한"을 삭제한다.

제4조 "제1항 제4호"를 삭제한다.

제7조 "제2항 제2호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당사자의 일방과 민법상 8촌 이내의 친족관계 또는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
관계에 있는 경우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환에관한조례	제명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농지법(이하 "법"이라한다)및농지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한다)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.	제1조(목적)이 조례는 농지법(이하 "법"이라한다)및농지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한다)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(삭제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위원회의 기능)①(생략) 1.-3.(생략) 4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 5.-8.(생략) ②-③(생략)	제4조(현행과 같음) 1.-3(행행과 같음) (삭제) 5.-8(현행과 같음) ②-③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의 제척.기피및회피)①(생략) ②(생략) 1.(생략) 2.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 ③-④(생략)	제7조(위원의 제척.기피및회피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(현행과 같음) 2. 당사자의 일방과 민법상 8촌이내의 친족관계 또는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관계에 있는 경우 ③-④(현행과 같음)
제11조(임차료의 상환) 법 제25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환은 별표2와 같다	제11조 삭제

4. 60세이상의 高齡으로 인하여 더이상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한 기간이 5年을 초과하는 農地

第23條(質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)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의 契約은 書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.

第24條(質貸借의 기간)

削除 <99.3.31>

第25條(賃借料의 上限)

削除 <99.3.31>

第26條(默示의 更新) 賃貸인이 賃貸借期間 만료 3月전까지 賃借人에 대하여 그 更新의 거절 또는 賃貸借條件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賃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.

②법 제22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"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(특별시)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. 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·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를 말한다.

제26조(임대차연장기간의 특례)

삭제 <'99.10.11>

제27조(임차료의 상한)

삭제 <'99.10.11>

제28조(임차료의 지급)

삭제 <'99.10.11>

제29조(공과금등의 부담)

삭제 <'99.10.11>

제21조(표준계약서) 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96.12.28>

제22조(임차료의 상한조정 등)

삭제 <99.12.7>

조례 ·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항 심의안건

의안번호	37	관련부서	농업축산과
조례 · 규칙	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4조, 제11조		
관련법규	농지법		
규제사무	임차료의 상한		
규제내용	읍 · 면 · 동별 임차료 상한 규정		
실무소의견	<p>【폐지】</p> <p>임차료의 상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지 타당</p>		
연구진의견	【폐지】		
평택시의견	【폐지】		
규제개혁위원회의견	【폐지】		
의결내용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폐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완화	<input type="checkbox"/> 존치

조례·규칙등에 근거한 규제사항 심의안건

의안번호	31	관련부서	농업축산과
조례·규칙	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7조		
관련법규			
규제사무	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		
규제내용	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기피 신청		
실과소의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완화】</p> <p>당사자의 일방과 민법상 8촌 이내의 친족관계 또는 주민등록 법상 동일세대 관계에 있는 경우로 완화</p>		
규제개혁 위원회의견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완화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친척관계라 함은 민법상 8촌이내의 친족 등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같은 지역내에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농촌 현실에 비추어 조문상 문제가 있으며, ○ 특별한 친교관계란 문구도 애매하고 명확치 않아 혼돈 우려로 재정립 필요 		
의결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폐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완화	<input type="checkbox"/> 존치